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는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을 비롯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부실별점통합관리시스템, CM능력평가시스템, 정부인트라넷,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대국민정보서비스시스템 등을 망라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종합정보망을 활용해 공사실적, 보증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부실건설업체를 수시로 점검, 퇴출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종합정보망 가운데 하도급공사 정보망에 대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과 홍보를 거쳐 올해말 본격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도급관리대장에는 하도급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기성금 지급현황, 설계변경 현

황 등이 기재된다.

건교부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장 주요 내용을 통보하며, 하도급관리대장과 보증기관의 건설보증정보 등과 연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하도급공사 관련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어 연말 하도급공사 정보망이 본격 가동되면 하도급업체도 부당하도급 행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건교부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직접 입력하는 하도급공사 정보망이 가동되면 원도급자 보고 내용과 실시간 비교가 가능해 부당하도급 등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하도급계약통보, 건설공사대장통보와 하도급업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연계·확인하면 원도급자의 통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대장에는 공사개요부터 보증내역, 현장기술인, 기성현황을 기록하고 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때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수량 및 단가내역서 등과 건설공사 진행, 참여자,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하도급자는 하도급공사대장을 작성,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에 올릴 때 하도급공사 개요부터 하도급보증내역, 하도급현장기술인, 하도급기성현황, 설계변경현황 등을 낱알이 기록하게 된다.

발주자는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을 실시간 파악, 관리하고 원도급업체의 신고내용과 비교

해 불공정계약을 확인·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되면 발주자의 공사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아 관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조세포탈, 저가하도급 심사 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때 제출되는 기성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허위실적 등 부조리를 원천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내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까지는 하도급관리정보망 구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시행방안

기본방향	세부내용
통보하는 주체	- 1차 하도급업체 : 자사의 계약사항을 직접·통보
통보받는 주체	- 발주자
대상 공사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b>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b>
과태료 부과방식	- 현행 건설공사대장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 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허위기재나 미통보를 강요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됨.
정보 상호 교차검증	- 발주자가 원도급업체가 통보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하도급공사대장”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함.
원도급 - 하도급 공사 통합관리	-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도급대장과 원도급업체의 건설공사대장과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설계 - 공사현장기준으로는 전체 참여업체 및 참여자의 실명 관리 - 건설업체기준으로는 해당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실적의 종합적 관리

※ 시행방안은 시범운영 이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공사 정보망에 대한 Q&A

###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은 '07년 하반기에 개정예정입니다.

###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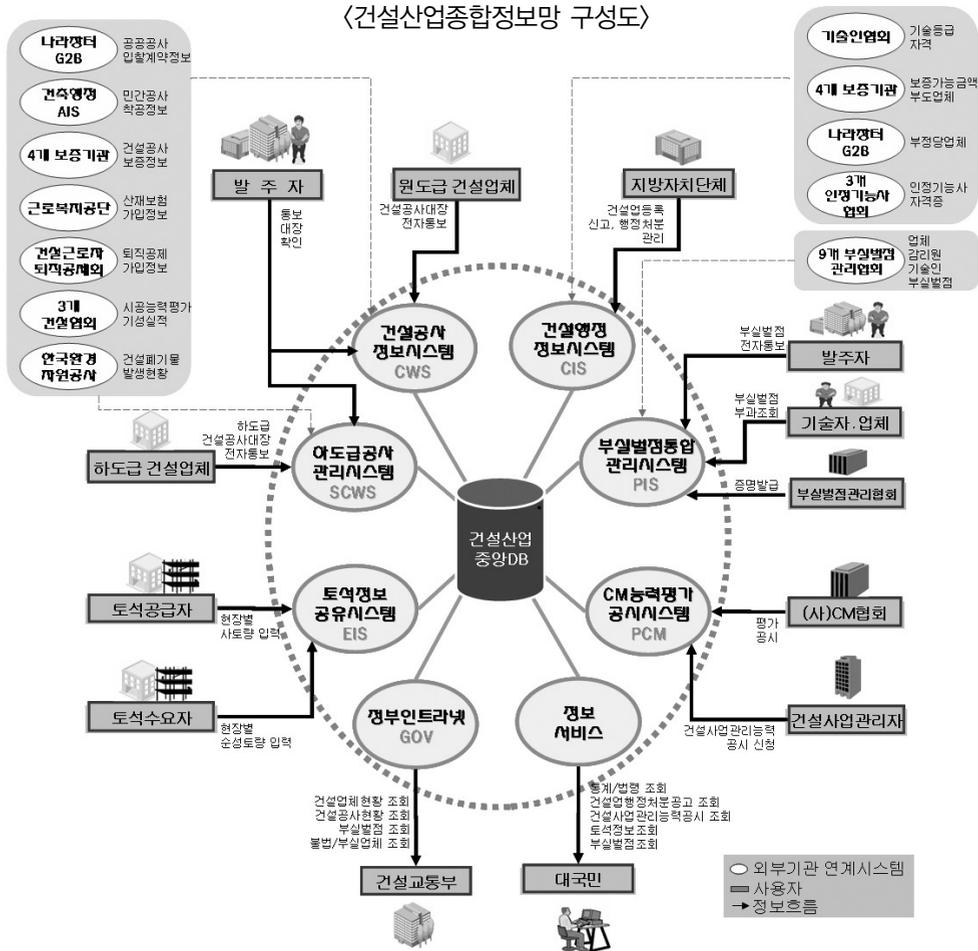
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부실별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2007년 9월 경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며 2007년 1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법 개정 일시와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7.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해야 합니다.

**8.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제2항(개정 예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현재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입니다.
- 즉, '07년 11월 1일(예정일)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현장으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통보대상여부
1억원 이하	하도급공사	X
1억원 이상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	X

**9.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요청받은 경우 처분여부를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11.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